

증평군 트랙터용 제설기 관리지침 [2006. 1. 10 훈령 제24호]

일부개정 2017. 1. 20 훈령 제111호

제1조(목적) 이 지침은 동절기 관내도로의 신속한 제설 작업을 실시하여 도로를 이용하는 차량 및 농기계의 안전을 도모하고 지역의 교통소통을 원활히 하고자 농업용 트랙터에 부착하는 제설기를 관리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용어의 정의) ① “제설기”라 함은 군수가 관내 트랙터에 부착하여 공공도로의 제설작업에 사용토록 배부하는 제설기를 말하며 기타 민간인이 보유하거나 기증된 제설기를 공공도로의 제설작업에 동원 할 시에도 해당된다.

② “보관자”라 함은 제설기를 공급받아 트랙터에 부착하여 보관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.

③ “운전자”라 함은 제설기와 트랙터를 직접 운전하여 제설작업을 실시하는 자를 말하며 보관자와 동일 할 수 있다.

④ “확인자”라 함은 제설기의 사용 현황과 관리 현황을 확인하는 자를 말하며 마을의 대표자가 확인자가 된다.

제3조(관리) ① 제설기의 관리는 해당 읍·면장이 관리한다.

② 읍·면장은 제설기의 유지관리에 책임을 지며 항상 가동 할 수 있도록 정비 및 준비되어야 하고 운전자를 지휘하여 제설작업이 원활히 되도록 행정지원을 다하여야 한다.

③ 읍·면장은 보관자와 운전자에게 별지 제3호서식(장비 성실 관리 협약서)을 제출받아야 한다.

④ 읍·면장은 해당마을별 제설작업의 완료 및 시간을 확인하고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임차료를 해당과에 요청해야 한다.

제4조(사용방법) ① 제설기의 보관자와 운전자는 제설기가 적기에 작동 및 작업 되도록 정비와 유지관리에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.

② 제설작업은 읍·면장의 지시에 의하여 작업하며 공공성이 높은 도로의 순으로 작업 하여야 한다.

③ 운전자와 확인자는 제설작업에 관한 기록을 별지 제1호서식, 별지 제2호서식에 의거 정당하고 사실에 준하여 각각 작성하여야 하며 읍·면장이 제출요구 시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.

④ 운전자는 장비 사용시 안전에 유의하여 작업하여야 한다.

⑤ 작업을 개시 할 때는 읍·면장에게 보고하고 지휘를 받아 작업에 임한다.

제5조(사용범위) 「도로법」 제10조에서 열거한 도로를 제외한 마을진입도로와 마을안길 등의 제설작업에 사용해야 한다. <개정 2017. 1. 20>

제6조(사용경비) 군수는 제설기장착 트랙터의 임차료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.

제7조(변상책임) 보관자 및 운전자가 고의 또는 중과실로 인하여 장비를 파손 또는 훼손시켰을 경우 이를 변상하여야 한다.

부칙

이 규정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부칙(2017. 1. 20 훈령 제111호)

이 지침은 발령한 날부터 시행한다.

[별지 제2호서식]

작업일지

200 년 월 일 요일 날씨

작업가동사항				정비사항		
작업개시시간	시	분				
작업종료시간	시	분	정비 실시 시간	시	분	
가동시간	시간	분	정비종료 시간	시	분	
순작업기간	시간	분				
식사시간	시간	분				
기타	시간	분	경유소비량			
작업내용	구간	작업소요시간	m			
		시간 분	m			
		시간 분	m	정비내용		
		시간 분	m			
		시간 분	m			
		시간 분	m			
		시간 분	m			
작업특수내용(작업별 작업인원 및 작업의 특수성 기록)				운전자	(인)	
				확인자	(인)	

[별지 제3호서식]

장비 성실 관리 약속서

- 장비명 : 제설기
- 수 량 : 대

본인은 상기 장비를 배정받아 관리함에 있어 「증평군 트랙터용 제설기 관리지침」을 준수하고 성실히 관리하겠습니다. 읍·면장의 지휘에 따라 관내 제설작업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약속서를 제출합니다.

200

작성자

주 소 :

성 명 : (인)